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Determinants of Financial Interchanges and the Amount of Monetary Exchang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지경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송은경

Labor Insurance Research Center, Korea Labor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Kim, Ji-Kyung

Dept. of Home Economics, Chung Ang Univ.

Master Course : Song, Eun-K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daily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vol. 5(2002). From this dataset,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thirty six adult children's households that had interchanged with or transferred financial resources to or from their pare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when compared to non-interchanging households, the households that interchanged financial resources with their parents tended to have a household head who is economically active, and had relatively plenty of financial resources. Second,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was much larger for the adult children's households that were reciprocally interchanging financial resources with their parents than the households that transferred resources one-way, either taking from or giving to parents. Third, the main determinants of interchanges with their parents were the household hea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ex, age, and education) and residential area. what affected the amount of the exchanges, on the other hand, were the household hea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ex, age, and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assets.

▲주요어(Key Words) : 부모(parents), 성인자녀(adult children), 경제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자원교류(resource interchange)

I. 서 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계 경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부모부양 비용의 증가

* 주 저 자 : 김지경 (E-mail : jkkim@kli.re.kr)

및 과거와는 다르게 생애주기 속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자녀지원 비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연정(1998)의 연구와 도시가계조사(통계청, 2001)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 노인가계가 그들의 경제생활을 자녀로부터의 사적인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구의 입장에서도 결혼과 독립이 늦어지고 경제적

으로도 자립이 어려운 사회여건에 의해 독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는 부모-자녀간의 밀착된 관계가 장기간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세대간 의존하는 양면적 관계는 가족 및 친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부모 및 자녀 가구 모두에게 중요한 소득원천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 및 경기불안정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국민연금체제 및 사회보장 제체의 미비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가족간 소득부양의 형태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특정 계기와 목적을 갖는 일방적 자산이전(endowment)이 아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지원(support) 차원으로 주고받는 일상적(daily)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즉 과거보다도 부모와 자녀 간에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교류 즉 용돈이나 선물 혹은 생활비 지원 등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적인 경제적 교류는 친척이나 이웃 등 외부로부터의 이전보다도 부모와 그들의 자녀간의 자원을 주고받는 교류가 핵심이 되며, 이에 관련된 연구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상이 된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와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은 단지 부모부양이라는 목적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캐거루족과 같은 자녀지원의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부모 - 자녀간의 양방향적인 문제이므로 그러한 상호성(reciprocity)을 고려한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 이동을 교류(interchange)와 이전(transfer)의 측면에서 그 특성과 요인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구와 자녀가구간의 경제적 자원교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가구에서 부모와의 일상적 교류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자녀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가구의 특성이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부모와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어떠한 가구 특성을 배경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류를 한다면 실제 어느 정도 교류하는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어떠한 차이가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반영되며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부가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전국 3,500가구 9,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실태조사(전국가족조사, 2003)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내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남편의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높다’는 결과는, 경제적 자원교류의 대상이 부모와의 자원교류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양방향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실제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교류대상과 형태의 선택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이

전에 관한 연구들(배종열, 1997; 문영소 & 김양희, 1999; 박명희 & 정주원, 2000; 이정읍 & 김명자, 2001; 정영숙, 2002; 배희선 & 최현자, 2002)과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모부양에 관련한 경제적 부담에 관한 연구들(이윤정, 1994; 윤성민, 2000) 그리고 국가에 의한 공공복지 연구(김기덕 & 손병돈, 1995; 손병돈, 1998, 1999; 진재문, 1999; 하윤숙, 1999; 백은광, 2000; 홍경준, 2003)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문화적 배경 하에서 자산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행동 및 의식에 관한 정서적인 특성을 주된 관심사로 하거나 복지적 측면에서 가구로 들어오는 사적인 이전소득의 경제적 효과들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부모가구와 자녀가구사이의 경제적 자원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그 교류의 정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해보는 실증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가족간 자원이동에 관해 그 초점의 변화가 요구되며 대상 선택의 재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부모 -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하여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먼저 경제적 자원을 가족간에 주고받는 교류의 측면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전가하는 유산상속이나 자산증여 혹은 부모부양의 측면으로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즉 부모세대에 관해서는 노인재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자녀세대와 관련해서는 부모세대 부양비용을 가계지출의 한 항목으로써 연구하는 즉 각각 개별적인 영역에 그 초점을 두어왔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가족문화상 부모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인으로 독립하기까지 책임지는 양육방식 그리고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부양한다는 전통적 의식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 가족간 사적인 자원이 전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 특성과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사적인 자원이전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교류의 측면과 관련 변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부모와 그들의 따로 사는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를 다양한 교류의 형태 및 대상을 고려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교류의 현황과 자원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항목을 다루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자료의 가장 최근자료인 5차년(2002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이전 및 교류의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살펴보고 무엇이 그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내에서 미진하게 이루어져 왔던 부모-자녀간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의 문제를 부각해 봄으로써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의 일상적 교류에 관한 현황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우리사회의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의 이동에 관한 성격

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교류에 관한 개념

경제적 자원이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유형한 것으로 크게 소득과 부로 구분된다(배희선 & 최현자, 2002). 즉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소득과 부를 교류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상속이나 증여 혹은 현금이나 현물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용돈 및 현물 그리고 생활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사적 자원이전에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초점에 따라 이에 관한 다양한 자원이전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한 진재문(1999)의 연구와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추이를 각 소득원천에 따라 분석했던 김기덕 & 손병돈(1995)의 연구 그리고 2차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해 이루어져왔던 서구의 연구들(Tomes, 1981; Behrman & Pollak & Taubman, 1982; Cox, 1987; Cox & Rank, 1992; Shi, Leiyu, 1993; McGarry & Schoeni, 1995, 1997; Wilhelm, 1996; Altonji & hayashi & Kotlikoff, 1997; Secondi, 1997)은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이전되는 자원의 종류를 타가구로 부터 들어오는 현금 및 현물 그리고 시간서비스의 총 항목으로 다루면서 이전되는 자원의 종류와 범주를 매우 폭넓게 보고 있다. 이는 이전되는 모든 자원을 사적이전소득이라는 소득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사적이전소득의 효과측정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친지나 이웃으로부터의 이전은 매우 작은 비중이며 가사일이나 아기 돌보기 등의 시간서비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 교류에 관하여 상이한 정의를 내린 연구들도 있는데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을 연구한 배희선 & 최현자(2002)의 연구에서는 이전되는 자원을 ‘부모의 사후(死後)에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의 양으로 규정한 상속액과 부모의 사전(死前)에 지출되는 자녀관련 비용 외에 자녀에게 이전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증여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족간의 소득이전 결정요인에 관한 계층간 비교를 수행했던 손병돈(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그들의 동거하지 않는 기혼 남성자녀 간에 현금, 현물을 포함한 소득을 주고받는 행위’로 현실적으로 부모 - 자녀간의 이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의 정의는 사적이전을 ‘살아있는 생존자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나 현물 혹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던 Cox & Raines(1985)의 범주를 인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로 가족간의 소득이전은 여기서 서비스항목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의 이전이라고 정의하고 그 범주도 가족의 협의의 개념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남성간으로 한정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상 실질적인 경제적 교류의 대상을 부모와 기혼 남성자녀 간으로 한정하고 경제적 항목의 교류를 통해 가족간의 소득이전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낸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들에 적용된 경제적 교류항목의 범주는 부모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교류의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 자원이전의 주체인 부모와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들 간의 자원 공유(sharing)를 통제하기 위해 동하지 않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한 생활보조금이나 현금, 현가로 계산된 현물 등 일상에서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이전자원의 대상으로 한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이전자의 사망이나 가계의 특정 사건이 반영된 이전의 경우 일상적 이전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않아 같은 대상으로 간주하기에는 개념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개념은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이전소득 항목 중 친척·친지 보조금과는 차별화 되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교류금액 만을 지칭한다.

2. 관련연구의 고찰

기존의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이윤정, 1994; 김기덕 & 손병돈, 1995; 배종열, 1997; 문영소 & 김양희, 1999; 손병돈, 1999; 진재문, 1999; 하윤숙, 1999; 박명희 & 정주원, 2000; 백은광, 2000; 윤성민, 2000; 이정읍 & 김명자, 2001; 배희선 & 최현자, 2002; 정영숙, 2002; 홍경준, 200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복지와 사적이전과의 관련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소득 및 빈곤해소의 가족복지 기능이 있음을 밝히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익성을 통한 소득지원인 공적이전소득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들로 실상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연구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던 가족간 경제적 교류의 연구들 중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했던 김기덕 & 손병돈(1995)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전소득이 오히려 1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이전소득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 가족간에 이루어진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오히려 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적이전이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이전보다 재분배의 효과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국가·

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했던 홍경준(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소득이전이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와 함께 가족·국가·공동체중 가족에 의한 소득 안정화 효과가 국가나 공동체에 의한 효과보다 크다는 결과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이 그 원인임을 강조하였다. 계층별 사적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분석과 빈곤완화의 효과를 각각 분석했던 손병돈(1998, 199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은 부모의 욕구와 제공자인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면서, 최하소득계층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요인이 소득이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최상계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동기이외 기타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또 사적인 가족간의 경제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지만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가계 경제적 측면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 전의 분배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던 배희선 & 최현자(2002)의 연구에서는 가계가 한 가지 기준이 아닌 다양한 분배기준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기존의 전통적 출생관련 기준에서 벗어나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할 때 다양한 분배기준을 적용함을 보여주어 사회복지적 측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된 요인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결과들을 보건데 우리나라의 가족간의 사적인 경제적 교류의 규모는 공공복지에 의한 보조금액에 비하여 훨씬 크며 수혜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가족간의 경제적 교류의 효과 역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간의 경제적 교류에 있어 이전자와 수혜자(recipients)의 소득(income) 및 자산(asset)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다른 변인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반면 서구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두 가지 동기이론(Motive Theory)을 중심으로 가족간 경제적 교류를 다루어 왔다. 동기이론의 하나인 이타주의이론(Altruism Theory)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수혜자일수록 더욱 이전 받게 되는 즉 이전과 수혜자의 소득이 부(-)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설명하며, 다른 하나인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서는 이전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교환으로서 지불(payment)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이타주의적 부모는 자녀들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더욱 이전을 하게 되는 반면 그 자녀의 소득이 어떤 원천에 의해 증가하게 되면 자원이전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교환이론에서는 이러한 이전과 수혜자의 소득에 관하여 일정한 방향을 언급할 수 없다. 이는 이타주의적 시각과는 달리 교환이론의 중심이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및 전화, 방문빈도 등의 서비스가 잠재적인 자녀의 자산규모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Cox, 1987). 즉 교환모델에

서의 이전은 수혜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rewards)이나 구매(purchase)이기 때문에, 이타주의관점에서 수혜자의 소득과 이전의 양이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교환적인 관점에서 수혜자의 소득은 이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녀서비스 욕구에 따라 정(+)적일수도 혹은 부(-)적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동기이론은 이타주의이론에 의해 가족을 통한 소득균등화 및 경제적 복지(well-being)의 직접적 이전(direct transfer)을 설명하게 되고, 교환이론을 통해 수혜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rewards)이나 구매(purchase)를 설명하게 된다.

서구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자원이전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기이론의 틀 속에서 상속 및 유산(bequest) 그리고 가족간의 경제적 자원이전(inter-vivos financial transfers)에 관한 이전 가능성 및 그 규모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 실증적인 분석을 다수 수행해 왔다(Menchik, 1980; Tomes, 1981; Behrman & Pollak, & Taubman, 1982; Bernheim & Shleifer & Summers, 1985; Cox, 1987; Cox & Rank, 1992; Shi. Leiyu, 1993; McGarry & Schoeni, 1995, 1997; Wilhelm, 1996; Altonji & Hayashi & Kotlikoff, 1997; Secondi, 1997). AHEAD(the Asset and Health Dynamics)자료를 분석하여 70세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혜자와 제공자의 이전과 소득의 관계를 연구한 McGarry & Schoeni(1997)의 연구는 낮은 소득범주의 자녀들은 이전 받을 가능성과 규모가 모두 소득범주가 높은 자녀들에 비하여 높다고 하였고, 잠재 수혜자인 형제수가 증가할 때 이전의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분석하여 이타주의이론을 지지(Lee & Parish & Willis, 1994; Dunn, 1994; Tomes, 1981; McGarry & Schoeni, 1995, 1997)하였다. 반면 Cox(1987)의 경우 PCPP (President's Commission on Pension Policy)를 통하여 가구단위로 자원이전의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수혜자의 소득과 이전되는 총액이 정(+)의 관계를 이루면서 이타주의 모델과는 상충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MacDonald, 1990; Cox & Rank, 1992; Secondi, 1997).

이와 같이 국내연구들은 자원이전의 사회복지적 효과 및 정서적 측면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간의 사적인 소득이전에 관한 정서적 기준을 파악해온 반면, 서구의 경우는 자원이전의 동기이론(Motive Theory)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가족간의 경제적 교류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이전의 특성을 밝히고자 미시적인 분석을 수행해 왔다. 또한 부모와 자녀사이의 사적인 경제적 교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2차데이터가 부족한 우리와는 달리 서구의 경우 HRS(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나 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HEAD(the Asset and Health Dynamics)등의 전국자료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국내와 서구의 연구동향이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서구와 우리의 가족간 자원이전에 관한

동기가 다르다는 배경이 있다. 즉 서구에서 말하는 사적이전의 동기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사적이전이 수혜자에게 이전자의 복지를 직접적으로(directly) 이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적이전이 공적이전 효과(effectiveness)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기와 원인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McGarry & Schoeni, 1997).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동양권의 경우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책임을 당연시 여겨지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 가족간 사적인 자원이전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서구에서와 같이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동기나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아 왔던 배경이 되었다.

이외에도 Lee & Parish & Willis(1994)와 Secondi(1997)의 연구에서는 각각 타이완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부모에 의해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자녀에 의해 부모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지원 간에는 강한 상호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또한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이전행동이 자녀에서 부모에게로 이전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결론을 보였다. 하지만 Cox & Rains(1985)의 연구에서는 총 연구대상의 64%가 부모세대에서 젊은 세대에게 가는 이전이라는 현상을 보여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Schoeni, 1997 재인용). 이와 더불어 Cox & Rank(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양측 부모와의 접촉은 각각의 이전양과 정(+)적인 관계들이 관찰되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었다.

3. 관련변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관련한 연구들에서 연구의 대상과 분석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변인은 성별과 학력 그리고 가족원 수와 직업유무이다. 성별의 경우 이전자와 수혜자의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는데, Secondi(1997)와 McGarry & Schoeni(1995)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이전할 경우 대상이 무배우자 이면서 어머니일 때 이전의 가능성과 규모가 모두 증가한다고 하였고,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Cox(198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남성보다 지원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받는데 대한 일종의 보상의 측면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있어 수혜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이전자의 성별 즉 자녀와 부모의 성별 모두가 의미 있는 변인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대부분 모든 연구에서 유의한 특성을 보이며 매우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교류활동이 활발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1997; 손병돈, 1998; 진재문, 1999). 가족원 수 역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수나 부양해야 하는 부모 등의 동거가족이 많을 경우 자원이전 양이 줄어들며 반대로 이전 받는 자원의 양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정된 가계 자원을 가족원에게 분배할 경우

그 가족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량도 줄어들기 때문인데, 실제로 자녀수가 많을 경우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나 양육비가 매우 높고 노부모나 형제자매들이 동거한다면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게까지 돌아가는 자원의 양은 감소할 것임은 자명한 결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업유무 역시 이전자가 직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욱 이전하며 반대로 직업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더욱 수혜 받는다는 부(-)적인 결과(McGarry & Schoeni, 1995, 1997; 손병돈, 1998)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연령과 가계의 소득 및 자산관련 변수들은 각 연구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연령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 결과(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1997; Secondi, 1997; 진재문, 1999)에서는 부모의 연령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은 낮을수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McGarry & Schoeni(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높을수록 이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전자(前者)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나 복지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고연령의 부모나 어린 자녀에게 더욱 이전한다는 이타주의모델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Secondi(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에서 부모로의 이전은 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 더욱 자녀에게 이전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지역문화의 특성상 부모가 손자손녀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전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안정된 기반과 소득에 놓여있음을 예상해 볼 때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인 가계의 안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관련 변수는 앞서 언급한 자원이전의 동기에 중요한 변인으로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이전의 방향과 관계없이 이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이전자의 자산과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이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자원이전의 동기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즉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타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전 양이 감소하게 되며(Tomes, 1981; 손병돈, 1988; Dunn, 1994; McGarry & Schoeni, 1995, 1997), 교환주의적 관점에서는 수혜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Behrman & Pollak, & Taubman, 1982; Cox, 1987; Cox & Rank, 1992; Secondi, 1997). 이처럼 자산과 소득은 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전액수와의 관계가 정(+)적이라는 공통성을 지니지만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이전의 동기에 따라 그 결과해석에 개별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수와 더불어 부모의 건강상태나 자녀와의 근접성 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진재문(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건강상태와 이전규모가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

면서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더욱 이전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이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손병돈(1998)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을수록 자원교류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근접성은 접촉 용이성과 연락빈도 등을 통해 측정되는데 McGarry & Schoeni(1995, 1997)와 손병돈(1988)의 연구에서 이러한 근접성은 자원이전규모와 정(+)의 관계를 지니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 접촉이 높을수록 자원이전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자원교류가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조건을 지닌 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족의 유대관계가 반영된 행위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이하: KLIPS)자료이다. KLIPS에서는 4차년도(2001년)부터 '가족관계'의 부분에서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다. 국내의 전국데이터 가운데 가족의 사적인 경제적 이전액을 다루고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나 '가구실태조사' 그리고 KLIPS 자료가 해당된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의 '수증 및 보조' 항목이나 '가구실태조사'의 '사적보조금' 항목은 타가구로부터 받은 송금 및 생활보조금 전체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없다. KLIPS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관련 항목은 가구주(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중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유무를 묻고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관한 질문과 함께 부모님께서 주시는 경제적 도움과 부모님께 드리는 경제적 도움을 연간 총금액으로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IPS의 5차년도(2002)자료 중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1,837가구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따로사는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기초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이전유형과 대상에 따른 평균 교류액을 산출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의 대상은 한 해 동안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이전을 제외하고 생활 속에서 교류되었던 생활보조금이나 용돈, 현물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주는 용돈이나 생일선물 혹은 일시적인 모든 경제적 지원이 포함되며, 물건으로 교류된 현물은 모두 현가로 계산되어 포함된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주관련 특성들과 함께 가구특성으로써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취업자수, 거주지 그리고 가구소득과 자산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s)인 자가보유여부, 부채유무 그리고 금융자산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구주 특성과 함께 세분화한 교류대상을 가변수화 하여 포함시켰으며,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취업자수 그리고 가구소득과 금융자산은 각 액수의 자연로그 값이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이 중 이전유형(transfer type)은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 하는 경우와 드리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한 방향으로의 이전으로 제시하였고, 부모님 가구에 부모님이 모두 생존하시는지, 아버님 또는 어머님만 생존해 계신가의 여부를 독립변수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와 교류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Heckman의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이하 SBCR)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BCR(Heckit)모델은 2단계 OLS(Ordinary Least Squares) 기법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와 교류액의 결정과정을 별도의 함수로 추정한다. 즉 1단계의 Probit 모델 분석에서 얻어진 하나의 추정치 mills ratio를 두 번째 회귀분석의 단계에서 부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SBCR모델(Heckit)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교류액의 결정과정을 각각 다른 특성의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는 가구에 의해 나타나는 선택편의 문제를 수정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1단계 Probit 모델의 종속변수의 경우 가구주의 부모든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든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를 '1', 교류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 OLS분석의 종속변수는 교류가 있다고 대답한 가구에 대하여 총 이전하는 액수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단계 OLS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형태에 따른 이전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구분된 이전형태를 가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1단계 프로빗분석 (N=1,837)	2단계 회귀분석 (N=1,024)
독립변수	가변수	가구주 성별 남자:1 (여자:0)	1단계와 동일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0) 40~49세:1 50세 이상:2	1단계와 동일
		가구주 학력 (고졸미만:0) 고졸:1 전문대졸이상:2	1단계와 동일
		가구주 취업형태 임금근로자:1 비임금근로자:2 (미취업:0)	1단계와 동일
		자가보유여부 보유:1 (미보유:0)	1단계와 동일
		부채유무 있다:1 (없다:0)	1단계와 동일
		거주지 (서울:0) 광역시:1 도:2	1단계와 동일
		교류있는부모 가구주 부모:1 (배우자 부모:0)	1단계와 동일
		생존부모 (두 분 모두:0) 아버지:1 어머니:2	1단계와 동일
		이전유형 (상호교류:0) 부모님께 받는다:1 부모님께 드린다:2	
연속변수	가구소득 금융자산 가구원 수 가구내 취업자수	월평균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1단계와 동일
		금융자산의 자연로그값	1단계와 동일
		응답한 총 가구원 수	1단계와 동일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의 수	1단계와 동일
종속변수	가변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교류 있음:1 (교류 없음:0)	
	연속변수	이전액	연평균 총 경제적 교류액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대상 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1,837가구 중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92.4%로 여성가구주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48.2%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평균 41.9세였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미만에 비하여 고졸이상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형태 역시 일

정한 직장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2.2%로 가장 높았다. 이를 가구의 가구원 수는 3~5명이 81.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3.6명으로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핵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가구 내 취업자수는 1명의 비중이 55.9%로 평균 1.5명의 취업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의 자산 관련 변수인 월평균소득과 금융자산은 각각 평균 271만원과 2,402만원으로 각 범주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거주지는 서울과 광역시, 도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지방거주의 대상자들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대상자들의 특성을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다'

라고 응답한 가구가 1,233가구로 '교류가 없다'라고 대답한 604 가구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았다.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하여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주 연령은 평균 41세로 평균 43세인 비교류 집단보다 젊은 연령집단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에 따라 보다 분명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는데,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고학력 가구주가 많았다. 또한 취업형태도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교류가 없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두 집단의 표본수 분포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의 가구주는 비교류 가구의 가구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학력수준이 높고 취업상태에 있는 경제활동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젊은 자녀가구의 집단에서 부모와의 일상적 교류활동이 보다 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구주 특성은 모든 요인에서 비교류 집단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표 3>에 제시한 분석대상 가구의 특성의 경우 자산관련 변수들 중 자가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교류가 존재하는 집단이 평균 292만원으로 비교류집단의 평균 228만원에 비하여 약 64 만원 가량의 차이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도 교류집단이 비교류집단 보다 약700만원정도의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김기덕 & 손병돈, 1995; 배종열, 1997; 손병돈, 1999; 진재문, 1999; 하윤숙, 1999; 백은광, 2000; 배희선 & 최현자, 2002; Cox, 1987; Cox & Rank, 1992; McGarry & Schoeni, 1995, 1997; Altonji & Hayashi & Kotlikoff, 1997; Secondi, 1997)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제적 여유가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 촉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의 경우 교류가 있는 집단이 비교류 집단에 비하여 부채보유가구가 52.4%로 43.8%인 비교류 집단에 비하여 다소 높고 부채액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집단은 비교류 집단에 비하여 가구원수와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다소 높았으며 각각 평균 3.6명의 가구원 수와 1.4명의 가구 내 취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류집단의 경우 서울보다 광역시 및 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교류 집단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방거주가구가 서울거주가구보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 표본 분포상 도지역의 가구 수가 많았고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대상가구가 많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다음단계의 분석에서 실제 이전행동과의 관련성을 통해 파악해 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분석을 통하여 볼 때,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가 경제활동상태라는 것과 비교적 소득이나 자산을 많이

<표 2> 부모와 경제적 교류 유무에 따른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n, %)

구분	특성	범주	경제적교류 사례수(%)		있다	없다	$\chi^2(t)$
			1,837(100)	1,233(67.1)			
전체			1,837(100)	1,233(100)	604(100)		
가구주	성별	남	1,699(92.4)	1,155(93.6)	544(90.0)	75(9.9)	7.59**
		여	138(7.5)	78(6.3)	60(9.9)		
	연령	40세 미만	887(48.2)	628(50.9)	259(42.8)		
		40세~49세	546(29.7)	358(29.0)	188(31.1)	57(15.9)	12.58**
	학력	50세 이상	404(21.9)	247(20.0)	157(25.9)		
		평균(세)	41.9	41.4	43.0		3.04**
	취업 형태	고졸미만	353(19.2)	207(16.7)	146(24.1)		
		고졸	769(41.8)	504(40.8)	265(43.8)	93(15.9)	26.60***
		전문대~대학	715(38.9)	522(42.3)	193(31.9)		
	취업 형태	평균(년)	12.7	12.9	12.2		-4.64***
		임금근로자	1,113(62.2)	753(62.8)	360(60.9)		
		비임금근로자	527(29.4)	365(30.4)	162(27.4)	95(16.6)	
		미취업	149(8.3)	80(6.6)	69(11.6)		13.36**

*: p<.05, **: p<.01, ***: p<.001

<표 3> 부모와 경제적 교류 유무에 따른 가구특성

(단위:n, %)

구분	특성	범주	경제적교류		$\chi^2(t)$
			사례수(%)	있다	
가구	월소득	100만원미만	116(6.3)	52(4.2)	53.18***
		100~200만원미만	566(30.8)	354(28.7)	
		200~300만원미만	561(30.5)	375(30.4)	
		300만원 이상	594(32.3)	452(36.6)	
		평균(만원)	271.2	292.1	
	금융자산	1천만원미만	779(42.4)	477(38.6)	21.56***
		1천~5천미만	814(44.3)	578(46.8)	
		5천이상	244(13.2)	178(14.4)	
		평균(만원)	2,402.2	2,632.1	
	자가보유 여부	보유	946(53.9)	637(53.8)	0.002
		미보유	808(46.0)	545(46.1)	
	부채 유무	없다	925(50.3)	586(47.5)	11.99***
		있다	912(49.6)	647(52.4)	
		평균(만원)	4,242.1	4,365.2	
	가구원 수	1명	111(6.0)	63(5.1)	11.42**
		2명	172(9.3)	106(8.6)	
		3~5명	1,498(81.5)	1,031(83.6)	
		6명이상	56(3.0)	33(2.6)	
		평균(명)	3.6	3.6	
	가구내 취업자 수	없다	76(4.1)	41(3.3)	6.23*
		1명	1,028(55.9)	696(56.4)	
		2명이상	733(39.9)	496(40.2)	
		평균(명)	1.5	1.4	
	거주지	서울	466(25.3)	287(23.2)	12.92**
		광역시	556(30.2)	366(29.6)	
		도	815(44.3)	580(47.0)	

*: p<.05, **: p<.01, ***: p<.001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와 존재하지 않는 가구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차이만으로 어떠한 가구들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의 결정요인은 모델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액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실제 교류액을 먼저 살펴보았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액은 교류의 대상과 유형을 구분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교류액은 해당 가구 수와 비중 그리고 분류그룹간의 평균액 차이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검정통계량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을 살펴보면 '부모와 경제적 교류가 있다'(1,233가구) 라고 대답한 가구의 평균 교

류액은 201만원이었다. 이를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로 그 대상을 구분하여 볼 때 '가구주 부모와 교류한다'(1,036가구)는 가구는 201만원, '배우자 부모와 교류한다'(197가구)는 가구의 경우 198만원으로 가구주 부모와 교류하는 가구가 훨씬 많았고 그 교류액 또한 다소 높았다. 한편 전체 해당가구를 이전유형에 따라 구분했을 경우는 부모님과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적 형태의 가구(243가구)는 평균 287만원을 교류하고 있었고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가구(110가구)는 299만원, 부모님께 드리기만 하는 가구(880가구)의 경우 165만원을 이전하고 있었다. 즉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 가구들의 경우 드리기만 하는 가구에 비하여 해당 가구 수가 월등히 작았지만 그 이전액수는 훨씬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 세집단간의 평균 교류액 차이는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전체가구의 경우 이전하는 유형에 따라 교류액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실제 우리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경우보다 받는 액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이전유형 및 대상에 따른 경제적 교류액

(단위: 만원)

이전대상	이전유형	구분	전체	상호교류	부모에게 받는다	부모에게 드린다	검정통계량
전체		N % 액수	1,233 100 201.3	243 19.7 287.4	110 8.9 299.9	880 71.3 165.2	F=12.68***
가구주 부모와 교류한다		N % 액수	1,036 100 201.7	223 21.5 285.7	71 6.8 330.8	742 71.6 164.1	F=11.23***
배우자 부모와 교류한다		N % 액수	197 100 198.8	20 10.1 305.7	39 19.8 243.6	138 70.7 170.6	F=2.05
검정통계량			t=-0.11	t=0.14	t=-0.77	t=0.33	

***: p<.001

이러한 전체 대상을 교류 대상에 따라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교류여부로 구분하여 보면 가구주부모와 상호교류 할 경우(233가구) 평균 285만원을 주고받으며 평균 330만원을 받고(71가구) 평균 164만원을 드리는 것(742가구)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이전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보다 교류액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경우와 드리기만 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평균 이전액이 약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와 교류할 경우(20가구)는 부모님과 평균 305만원을 상호교류 하고 있었으며, 평균 243만원을 받고 있었고(39가구) 평균 170만원을 드리고(138가구) 있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그 이전액 차이 또한 가구주 부모와 교류할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전체적으로 부모에게 받는 경우와 드리는 경우의 평균 이전액의 유의한 차이는 가구주 부모와의 교류액 차이에서 기인함을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배우자 부모와의 교류보다 가구 주 부모와의 교류가 핵심이며 이는 최근의 실태조사(전국가족조사, 2003)에서 나타난 '아내의 부모로부터 더 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형태에 따른 구분을 기준으로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와의 교류액의 유의성을 알아본 결과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의 부모든 배우자의 부모든 부모와의 교류액은 교류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누구와 교류하는가 보다 어떻게 교류하는가가 더 주요한 관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정도는 첫째,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수는 적지만 그 교류금액은 많다는 것 둘째, 배우자 부모와 달리 가구주 부모와 교류하는 금액은

이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 셋째,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는 이전대상보다 이전의 형태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3.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여부와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SBCR모델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 교류여부를 묻는 <표 5>의 Probit 모델 분석에서는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학력 그리고 거주지역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은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결과는 달리 가구주가 여성일 때 보다 남성일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Cox(1987)와 Secondi(1997) 그리고 McGarry & Schoeni(1995, 1997)의 연구에서 이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그 확률이 높다는 결과들을 보이긴 했지만 이전을 하는 주체적 입장에서는 성별이 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경제력이 낮고 생활의 불안정성을 보유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한 가계의 안정성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게 하는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은 40대 미만의 가구에 비하여 그 이상의 가구에서 모두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젊은 가구일수록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상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높아지면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다 해당 가구에서 지출해야

하는 각종 비용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2000)에서 가구주 연령별 가구 소비지출액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구주 연령이 4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평균 소비지출액(2,226만원)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비의 증감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그들의 부모세대 역시 고령노인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해결해야하는 자체적인 비용과 교류의 상호성을 고려해 본다면 가구주의 연령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의 부(-)적 관계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여준 가구주 학력은 가구주가 고졸 미만의 학력인 경우에 비하여 전문대출 이상의 학력을 지녔을 경우 이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ox(1987)와 McGarry & Schoeni(1995, 1997) 그리고 Secondi(1997) 등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들로 교육의 효과가 직업과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 소득이나 자산과도 관련된 개념임을 본다면 서구의 경우든 우리나라의 경우든 자녀 가구의 여건이 좋은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또한 긍정적 일 수 있음을 반

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거주지의 경우는 서울지역에 비하여 광역시에 거주할 때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분석에서도 나타났던 결과로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일반적인 자원이전의 관련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즉 거주지역의 차이 역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중국지역의 연구를 통해 아시아적 문화를 고려했던 Secondi(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부모가 사회적 지원이나 독립적 생활을 하기 어려워 자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을 도움 받는 등 상호간의 중요한 서비스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모자녀간의 부양과 책임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다는 점에서 교환적인 의미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의 결정에 거주지와 함께 가구주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구주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의 핵심 요인이며 이러한 가구주 특성이 변할 경우 가구상태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반영되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5> 부모와 경제적 교류 여부의 결정요인 : 1단계 Probit Analysis

변 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2.64(0.57)***
가구주성별(여자)	남자	0.85(0.3)**
가구주연령(40세미만)	40-49세	-0.26(0.12)*
	50세 이상	-0.66(0.18)***
가구주학력(고졸미만)	고졸	0.08(0.15)
	전문대출 이상	0.40(0.16)*
가구주취업형태(미취업)	임금근로자	0.03(0.18)
	비임금근로자	0.14(0.18)
자가보유여부(미보유)	보유	0.06(0.11)
부채유무(없음)	있음	0.09(0.1)
거주지(서울)	광역시	0.33(0.13)*
	도	0.18(0.13)
가구주부모여부(배우자부모)	가구주부모	8.83(6150.4)
생존부모(부모모두)	아버지만 생존	0.24(0.25)
	어머니만 생존	0.09(0.11)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0.11(0.1)
금융자산	log(금융자산)	0.01(0.04)
가구원 수	응답한 총 가구원 수	0.03(0.05)
가구내 취업자 수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의 수	-0.08(0.09)
N		1,837
Log Likelihood		-411.63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 Probit 분석을 통해 얻은 mills ratio의 값과 부모와의 이전유형 변수가 추가되어 분석된 이전액에 영향을 미치는 2단계의 OLS분석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Lamda값이 유의하지 않음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지 않는 표본에 관한 선택편의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1단계의 교류여부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주 특성과 함께 가구자산관련 변수 그리고 추가된 이전유형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주의 특성의 경우, 1단계에서 유의했던 성별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가구주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40세 미만의 젊은 가계에 비하여 40세 이상의 가구에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상의 가구에서는 이전의 가능성과 함께 이전액 또한 감소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구주의 학력 또한 1단계와 동일한 고졸미만의 가구주에 비하여 전문대출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이 증가함을 보여주어 가구주가 젊고 고학력인 가구일수록 부모와 경제적 교류를 할 가능성도 높고 교류액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6>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 결정요인 : 2단계 Regression Analysis

변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2.66(0.31)***
Lamda		-5.08E-22(4.3E-22)
가구주성별(여자)	남자	0.11(0.12)
가구주연령(40세미만)	40-49세	-0.16(0.070)*
	50세 이상	-0.19(0.09)*
가구주학력(고졸미만)	고졸	0.09(0.08)
	전문대출 이상	0.33(0.09)***
가구주취업형태(미취업)	임금근로자	0.05(0.1)
	비임금근로자	0.13(0.11)
자가보유여부(미보유)	보유	-0.06(0.06)
부채유무(없음)	있음	0.07(0.05)
거주지(서울)	광역시	0.02(0.07)
	도	-0.02(0.07)
가구주부모여부(배우자부모)	가구주부모	-0.06(0.07)
생존부모(부모모두)	아버지만 생존	0.002(0.12)
	어머니만 생존	0.004(0.06)
이전유형(상호교류)	부모님께 받는다	-0.36(0.11)**
	부모님께 드린다	-0.59(0.07)***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0.44(0.05)***
금융자산	log(금융자산)	0.06(0.02)**
가구원 수	응답한 총 가구원 수	-0.11(0.02)***
가구내 취업자 수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의 수	-0.14(0.04)**
N		1,233
F값		14.05***
Adj-R ²		0.18

*: p<.05, **: p<.01, ***: p<.001

한편 1단계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가구소득 관련 변수인 월평균가구소득과 금융자산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 수에 관한 변수가 이전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이전액 또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여유가 부모와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는 배경과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자원의 이전자 입장에서 소득과 이전양이 정(+)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분석대상의 분포상 부모에게 드리는 자녀가구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부모에게 드리는 일상적인 경제적 도움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관련 변수들과 정(+)의 관계인 추정계수는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와 받는 경우 모두가 포함된 항목이기 때문에 자녀가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액수(amount) 역시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서구의 이전동인(動因)에 비추어 본다면 어느 한 측을 지지할 수 없는 혼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일반 가구원 수의 경우 교류액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일반 가구원 수나 취업하고 있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의 경우는 선행연구(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1997)와 마찬가지로 자녀수나 동거하는 가족수에 해당하는 지출 비용이 그 이유가 된다. 그러나 가구 내 취업자의 경우는 가구 내에 취업자가 많아 가구총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이는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는 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의 결과들로 종합하여 보건데 소득의 원천이 가구주가 아닌 기타 취업자의 소득의 경우는 가구총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각 소득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가구 내 취업자수의 증가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오히려 억제시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변인은 부모와 자녀간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적으로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에 비하여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 가구나 부모님께 드리기만 하는 한 방향 이전을 하는 가구의 경우 그 이전액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상호교류를 하기보다 한 방향 이전을 하는 가구가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이전을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의 상황에 있다면 최소한의 자원만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의 자산정도 그리고 부모와 자산을 주고받는 이전유형 및 가구원 수 관련 변수이며,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나면 가구주 성별과 지역적 차이 없이 자산이 많은 가구와 부모와 상호교류 하는 가구일수록 이전액이 늘어나며 가구원 수가 많고 한 방향 이전하는 가

구일수록 이전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속이나 증여의 개념으로 다루어 왔던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의 이동을 일상적 교류 및 이전이라는 측면으로 조명해봄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가 사회적 변화와 생애주기변화에 맞물린 펠연적 현상이며 부모나 자녀 어느 한 측뿐만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전체 표본 중 67.1%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모와의 교류가 대다수의 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가 존재하는 가구는 비교류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며 취업상태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았고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류액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기만 하거나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한 측의 이전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더 높으며,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가구는 드리기만 하는 가구에 비하여 그 이전액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의 성격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류는 적지 않은 규모의 특정한 목적을 지니는 이전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교류는 일상적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정도의 상대적으로 의례적인 이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자녀는 주로 소액의 자원을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이전하며, 부모는 그보다 좀더 많은 액수의 목적을 둔 이전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의 상호적 지원은 자녀집단이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모보다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상호 일상적 경제적 교류를 하는 쌍방향 교류의 경우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기만 하는 한 방향으로 이전(transfer)을 하는 경우보다 더욱 그 교류액수가 많다진다는 결과를 볼 때, 어느 쪽으로든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호의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교류관계가 더 많은 세대간 자원교류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지원이 의무로서 행해질 때보다 서로 상호 지원하는 연대관계가 형성될 때 보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용돈이나 현물 또는 생활비 지원 등의 형태로 세대간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에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나 지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가족문화 속에서 세대간 정서적, 시간적,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기가 점차 어려워져 공공복지의 통한 부모세대를

지원하는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괄적으로 노인가구나 취약가구에 대한 부양을 공적지원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당부분을 세대간 소득이전을 통해서 부양의 기능을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로써 해소되고 있는 부양의 기능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우리사회가 기대하고 있다면, 어떠한 매커니즘 속에서 세대간의 부양이 이루어지는 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떠한 틀로 설명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경제적 교류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가구주의 특성이 그리고 일단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가구의 경제적 요인과 이전형태의 차이가 교류액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경제적 교류에 있어 경제적 여건이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며, 동시에 그러한 교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결정과 정도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경제적 교류에 있어 교류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충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경제적 자원 교류의 여부 및 교류유형, 교류금액의 정도, 교류여부와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부양의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가족간의 자원교류를 분석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자원교류에 대한 시각을 보다 더 다양화 하여 경제적 자원교류가 발생하는 대상 및 형태 혹은 자원의 특성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새로운 모델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원교류는 경제적인 자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돋는다거나 자녀가 부모의 가사일을 돋는 등의 시간적 자원의 교류가 경제적 자원교류만큼이나 빈번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새로운 모델에 반영하거나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석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한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자원의 교류나 정서적인 교류도 함께 고려되어 분석된다면 세대간 자원교류를 성격을 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류액을 결정하는 2단계 OLS 분석에서 나타난 소득관련 변수들의 결과들은 정(+)의 관계로 나타나 소득 및 자산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즉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규모와 동시에 이전 받는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자원교류를 서구의 동기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수혜자일수록 더욱 자원이전을 받게 된다는 이타주의 이론이나, 자원이전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교환으로서의 지불을 의미한다는 교환이론 둘 중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이타주의 이론과 교환이론이 혼재된 동인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구의 사적인 자원교류를 설명해 왔던 기존의 동기이론들로는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원교류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의 사회현상과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 우리의 이론이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 까지 국내에서 부차적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 경제적 교류에 관한 연구들이 독립적 연구 분야로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먼저 세대 간 경제적 교류액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우리사회의 변화양상과 세대간 자원이전에 대한 관심과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07월 12일
- 심사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9월 14일

【참고문헌】

- 김기덕·손병돈(1995). 1982~92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
추세: 소득원천별,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6, 91-115.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8.
- 문영소·김양희(1999). 한국가족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57-171.
- 박명희·정주원(2000).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Ethnographic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8(2), 91-107.
- 배종열(1997). 현대 한국가족의 재산상속관행: 대구시 남자가족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희선·최현자(2002). 중, 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 *대한가정학회지*, 40(6).
- 백은광(2000). 공·사적 이전소득이 빈곤층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간 비교. *사회복지지연구*, 제11호, 여름, 99-115.
- 손병돈(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통권39호, 157-179.

- 윤성민(2000). 노인부양의 경제적 비용 계측 및 분석. *한국지역 사회학회*, 8(1), 155-175.
- 이윤정(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읍·김명자(2001). 중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1-165.
- 정영숙(2002). 은퇴한 노인의 부 및 죄적소비와 상속동기. *소비자학연구*, 13(2), 81-97.
-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분석. *사회복지 연구*, 13호, 여름, 167-199.
- 통계청(2001). 도시가계조사자료.
- 하윤숙(1999). 사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연구원(2002).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V).
- 한국노동연구원(2002).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한국여성개발원(2003). 전국가족조사자료.
- 홍경준(2003). 가족, 국가, 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Ⅱ.
- Altonji, J. G. & Hayashi, F. & Lasurance Kotlikoff(1997).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 : Theory and evid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1121-1166.
- Becker, G.(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82, 1063-1093.
- Bernheim, B. D. & Shleifer, A. & Summers, L. H.(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 Cox, D. & F. Raines(1985). Interfamily Transfers and income Redistribution -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eds). M. David and T. Smeeding. Chicago : NBER a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93-421.
-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95, 509-546.
- Cox, D. & Rank, M.(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Dunn, T.(1994). The distribution of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s across and within families. *Mimeographe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 James J. Heckman(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 Jere R. Behrman & Robert A. Pollak & Paul Taubman(1982). Parental preferences and provisions for progen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1), 52-73.
- MacDonald, M.(1990). *Family background, the life-cycle, and inter-household transfers*. Mimeographed.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 Maura E. Stokes, Charles S. Davis & Gary G. Koch(1997). *Categorical Data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 behavior :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 S184-S226.
-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 from The Asset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Vol.52B, Special Issue)*, 82-92.
- Menchik, P. L.(1980). Primogeniture, equal sharing, and the United States distribution of weal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2), 299-316.
- Robert F. Schoeni(1997). Private Interhousehold Transfers of Money and Time : New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4), 423-447.
- Secondi, G.(1997). "Private Monetary Transfers in Rural China : Are Families Altruistic?".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3(4), 487-511.
- Shi, Leiyu(1993). Family Financial and Household Support Exchange Between Generations : A Survey of Chinese Rural Elderly. *The Gerontologist*, 33(4), 468-480.
- Tomes, N.(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38-958.
- Wilhelm, M. O.(1996). Bequest behavior and the effect of heir's earnings ; Testing the altruistic model of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874-892.
- Yean-Ju Lee & William L. Parish & Robert J. Willis(1994). Son,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Taiwa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4), 1010-1041.